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The 2022 Prospects and Issues for Social Service Policy

안수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옥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 및 장애인·노인·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함으로써 2021년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정립, 내실 있는 이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핵심 정책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체계 공공 컨트롤 타워의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누구나 돌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보장의 국가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2017년 영국에서 시작된 보편적 기본서비스(UBS: Universal Basic Services)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Coote & Percy, 2020), 공공 주도의 서비스 공급, 지불 능력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보편적 서비스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문재인 정부 이후 강조해 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 이전까지의 사회서비스 정책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및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면, 현 정부는 시장화 전략 추진의 결과로 나타난 서비스 공급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공적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지역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공간 중심의 서비스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추진되어 왔던 생활공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핵심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고, 아동·장애인·노인을 중심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요한 욕구 영역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가. 정책 현황 및 쟁점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이자 성과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9월에 제정(2022. 3. 25. 시행)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 서비스 공급 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서비스 직접 공급과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사회서비스원은 조직 설립 자체에 매몰되어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11개의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나, 종합재가센터 29개, 국공립시설 70개, 정부 위탁사업 52개를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현황). 종합재가센터는 이미 포화된 돌봄(요양, 보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 차이가 없는 시급제 계약직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직접 고용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와 전달체

계의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은 채 사회서비스원 설립만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사업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서비스 기획, 제공, 지원 및 관리에 이르는 종합적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표 1>은 「사회서비스원법」 제32조와 제10조에 명시된 중앙 사회서비스원과 시·도 서비스원의 업무와 사업 범위를 정리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계획 수립, 연구·조사·개발 사업, 국공립기관 및 사업의 직접 운영,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 및 평가,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조직과 센터 설립이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앞으로

는 소프트웨어 내실화를 통한 내용적 공공성을 구현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밀착된 시·군·구, 읍·면·동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성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미 중앙정부 중심으로 대상별·영역별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제도별 재정 지원 방식과 전달체계가

표 1. 「사회서비스원법」 주요 내용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제32조)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제10조)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2.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개발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6. 시·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및 지원 7.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8. 사회서비스 관련 위탁 사업 9.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동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7. 지역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7호 (2022)을 기초로 저자 작성.

분절적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지역 중심의 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령, 통합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주체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도, 각 부처 사업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지자체의 권한과 통제 범위가 쪼개지고 제약되면서 사업의 지속성과 공적 책임성을 담보하기도, 이용자 효과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제도 재편,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확실한 권한과 책임 부여, 권한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 구축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나. 정책과제

2022년은 향후 사회서비스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원년이 되기 때문이다. 동법 제5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은 매우 광범위하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위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 15년간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쟁점들이 총망라되는 것이며, 세부 내용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대안 제시의 효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시켜 놓은 점, 그로 인해 구체적 실행 전략을 도출하기에 앞서 개념과 범주 논쟁에 비효율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세부 서비스 분야별 기본계획과 중복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내실 있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첫 단추로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간 다양한 통로로 논의된 정책적 쟁점과 축적된 대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단계별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실질적인 이행을 법에 의

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 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가. 정책 현황 및 쟁점

현 정부 들어 장애인 정책에서 화두가 된 핵심 이슈는 ‘장애등급제, 탈시설화, 발달장애인’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이 명시되었는데(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는 그간 한국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두 가지 기본 체계에 대한 방향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18년 발표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도 두 가지는 향후 5년간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8).

또한 장애인 정책 대상에서 주류로 떠오르면서도 미충족 욕구 또한 가장 컸던 발달장애인의 욕구가 크게 분출한 것도 현 정부 들어서다. 2017년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돌봄과 지원 욕구가 매우 높은 국민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기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2018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로 이어졌다(보건복지부, 2018).

이와 같은 최근의 정책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장애인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장애등급제와 시설 보호 전통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졌고,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정책 방향 전환에 대한 국제적 요구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고용 보장과 물리적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가 어느 정도의 발전 수준에 이르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서비스가 핵심 과제가 되는 것은 서구 장애인복지의 발전 과정에서도 목격되는 현상이다. 이제 한국도 장애인복지에서 그러한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국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핵심 과제로, 시행 일정이 미리 예고되었다. 2019년 7월 일상생활 지원 영역에서 먼저 장애등급 적용을 배제하고, 이후 2020년 이동 지원 영역, 2022년에는 소득·고용 지원 영역에 적용되는 일정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1단계 일상생활 지원 영역은 장애등급을 대체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개발과 시범사업이 상당 기간 동안 선행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단계 이동 지원 영역에서는 의학적 장애등급 적용을 유지하기로 하고,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지원 종합조사를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다. 2022년에 적용될 소득·고용 지원 영역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다.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적인 3단계 장애 등급제 폐지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계획보다 그 적용 범위가 축소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가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과 행정적인 준비 부족 탓이 크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질은 급여 자격 기준의 개편이고, 새로 적용되는 자격 기준은 과거 의학적 장애등급보다 개인의 욕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단계 일상생활 지원 영역에서 새롭게 적용된 종합조사에 의해 과거보다 급여 수준이 평균적으로는 상승하였지만 기준 변화에 따라 일부는 급여가 하락했다. 정부는 이전보다 예산을 늘려 이러한 감소 사례를 최소화하고 일정 기간 감소분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새로운 기준이 욕구를 더 잘 측정한다는 신뢰를 얻지는 못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2~3차 장애등급제 폐지에서 기존 수급 자격의 변동이 수반되는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물론 정부가 일상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장애등급제 폐지 외에 2~3차 장애등급제 폐지의 전면 도입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점도 적용 범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

2) 탈시설화 정책

탈시설화 정책은 애초에 계획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2022)에 따르면 중앙 차원의 탈시설화 정책은 2019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관계부처합동, 2018), 2021년 8월이 되어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심의·의결하고 탈시설화 정책 추진 기구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보건복지부, 2021).

정부가 일정까지 제시한 탈시설화 정책의 추진이 지연된 데에는 2019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기조로 등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장애인 탈시설화 사이에 빚어진 정책 혼선 탓이 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애초 계획에서 탈시설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지자체 주도의 사업 실행 과정에서 그 기조는 약화되었다. 정책 추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2021년 8월에 발표한 것이다. 다소 늦었다 할지라도 정책 방향을 다시 정립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1단계 폐지에 따라 시설 입소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그 사이에 대안적인 주거 지원은 확충되지 않아 정책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다.

3)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이전보다 빠르게 확충되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와 방과후활

동 서비스가 신설되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이 확대되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발달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원고용, 근로지원인, 건강주치의, 장애아 양육 지원 등도 최근 크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적 행동(challenging behavior)이나 중복장애를 동반하여 강도 높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지원 수준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의 높은 지원 욕구로 볼 때 향후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발달장애인 돌봄 총지출액이 노인 돌봄 총지출액의 87%에 달하는 수준이다(National Audit Office, 2018). 한국의 전체 장애인 돌봄 총지출액은 노인 돌봄 총지출액의 57%에 머무르는 상황이므로, 향후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확장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¹⁾

나. 정책과제

최근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핵심 과제가 되었던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는 애초에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수될 과업은 아니었다. 물론 처음에 계획했던 일정이

자연되고 정책의 심도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애초에 이 이슈들은 앞으로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장애인 정책의 핵심적인 추진 과제가 될 것이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등급제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등록제 개편까지 나아가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의학적 장애등급 혹은 개편된 의학적 장애 정도에 자격 기준을 의존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 이 사업들은 의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장애등급 적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2~3단계 장애등급제 폐지가 적용되는 이동·소득·고용 지원 영역에서 처음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면 적용하지는 못했더라도 점진적인 확대 적용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장애등급 대신 다른 자격 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은 장애인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제도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한국 장애인복지의 의료적 모델은 장애등급뿐만 아니라 제한된 장애 유형에서도 확인되며,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장애인복지 지출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등록제 폐지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은 무엇보다 흔들

1) 한국의 2018년 노인 돌봄 지출액(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포함)은 약 9조 원인데, 전체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출액이 약 5조 1천억 원이다. 이때 노인 돌봄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지출(SOCX)에 제시된 노인 분야 현물 지출액(약 2조 7천억 원)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중 공단 부담금(약 6조 3천억 원)을 더한 금액이며,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출액은 OECD 사회지출(SOCX)에 제시된 근로무능력 분야 현물 지출액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OECD, 2021).

립 없는 정책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의 정책 혼선 사례와 같이 다른 정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탈시설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장애인의 가족,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과 시설 단위에서 탈시설 모형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준비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시설 입소 기준을 강화한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돌봄 공백에 놓일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탈시설화 정책 추진 초기에는 서비스와 주거가 결합된 지역사회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범부처 차원으로 체계화하고 현장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였고 정기성이 담보되지 않은 계획이다. 이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종합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점·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심리·정서적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비스가 상당한 공백

인 것이 현실인 만큼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개별유연화(personalization)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별유연화는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서비스 이용에서 개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광범위한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 현금 지급 혹은 개인예산제로 구현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제안되는데 그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현실적으로 서구와 같은 개인예산제를 단기에 전면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등의 미충족 서비스 욕구가 매우 높으면서도 서비스 급여의 집행 효율성은 낮은 모순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 서비스 통합 이용과 급여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가. 정책 배경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인인구 규모 증가, 그리고 수명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현재 고령화율은 16.6%,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857만 1천 명이며, 2025년에는 고령화율 20.6%, 노인인구 수 1,058만 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대수명은 2020년 83.5세에서 2025년 84.7세로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통계청, 2021) 이와 같은 인구 변화는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의 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라는 과제를 부여하며, 국민 개인에게는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안정적 생활과 의미 있는 노년기 영위라는 과제를 던져 준다. 즉, 노인인구 증가, 고령화율 증가, 그리고 평균 수명 증가는 개인과 사회, 국가의 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는 2020년부터 65세 노인인구로 진입하며 2028년에는 전체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게 된다. 베이비부머는 전쟁 이후 사회가 안정되고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대 교육을 받았고, 1970~1980년대의 경제발전 시기에 근로연령대에 있으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부를 축적한 세대이다. 또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수급 대상이며,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스스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향후 이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노인 세대 진입은 지금까지의 의존적이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특성을 감소시키고, 자립성을 확대하며, 노후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주장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 특성의 변화는 노인의 소득, 건강,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이전 노인과 비교해 건강과 소득 수준에서 괄목할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에서는 적극적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현상, 욕구가 나타나고 있

다(이윤경·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김경래, 2020). 또한 노인 세대 내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의 특성에서 다양성과 양극화가 나타나 정책적 대상으로 유형이 세분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노인인구 증가는 노년기 다양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청장년층 감소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요구될 것이다.

나. 정책 현황 및 쟁점

노인복지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돌봄, 사회참여, 여가문화와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들 정책 중 최근 집중적 관심을 받으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치매돌봄 서비스(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그 외의 지역사회 단위에서 제공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최근 노인돌봄 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분절성을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202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비롯해

여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 사업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노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유사·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하고 개인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노인돌봄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치매 환자’에 대한 정책은 2018년 현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를 통해 치매 관리 정책의 전담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 시·군·구에 설치하여 치매 환자 돌봄의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치매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지난 몇 년간의 노인돌봄 정책 확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0년 85만 8천 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이용은 45만 명으로 130만 8천 명의 노인이 공공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급여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는 전체 노인의 약 15.4% 규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보건복지부, 2020). OECD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비율은 65세이상 노인인구 대비 재가는 10.7%, 시설은 3.8%로 총 14.5%와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서비스 수급자 규모는 상당 수

준의 성장 결과이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그러나 노인돌봄 수급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돌봄 서비스의 급여 다양성 및 급여량 부족 등으로 인해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용이 촉진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또는 노인끼리만 거주하는 부부 노인 가구 형태가 확대되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에서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및 돌봄 서비스는 이들의 돌봄 필요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서비스양(시간)과 이동 서비스나 식사 서비스, 야간 또는 수시 대응 서비스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재가 거주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병원을 통한 사회적 입원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과 시설 침상은 60.4개로 OECD 평균 45.6개와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 관리 인프라를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조기 검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증 치매 환자는 대부분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제공되지만,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전문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정책과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증가는 노인돌봄 정책에서 보장성 확보와 함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2022년 노인돌봄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 또는 aging in community)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노인돌봄 강화’와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 정립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우선, 지역 기반의 노인돌봄 강화 정책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에 대한 급여량 확대와 급여 제공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양 필요량이 높은 1~2등급의 월 급여 이용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이용수가 수준으로 높이고, 방문요양의 1일 1회 장시간(2~3시간) 방문 방식을 1일 다회 단시간 방문 방식으로 전환하며, 수시 및 야간 방문요양을 도입하여 돌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이동 서비스, 식사·영양 서비스, 주택 개보수 서비스 등의 새로운 재가급여를 도입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가에서 거주하는 것을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며, 복지 용구 확대를 통해 도구를 통한 자립적 돌봄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직접적 재가 서비스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장기요양보험으로 조기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며, 대상자 선정에서는 소득 수준을 없애고 누구나 노인맞춤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도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은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기능으로서, 치매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치매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인력에 치매 돌봄 전문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치매 전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노인 돌봄의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와 요양, 복지제도 간 대상자와 역할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 총비용의 효율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되, 병원에서 재가로 복귀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역 단위 노인돌봄 정책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가. 정책 현황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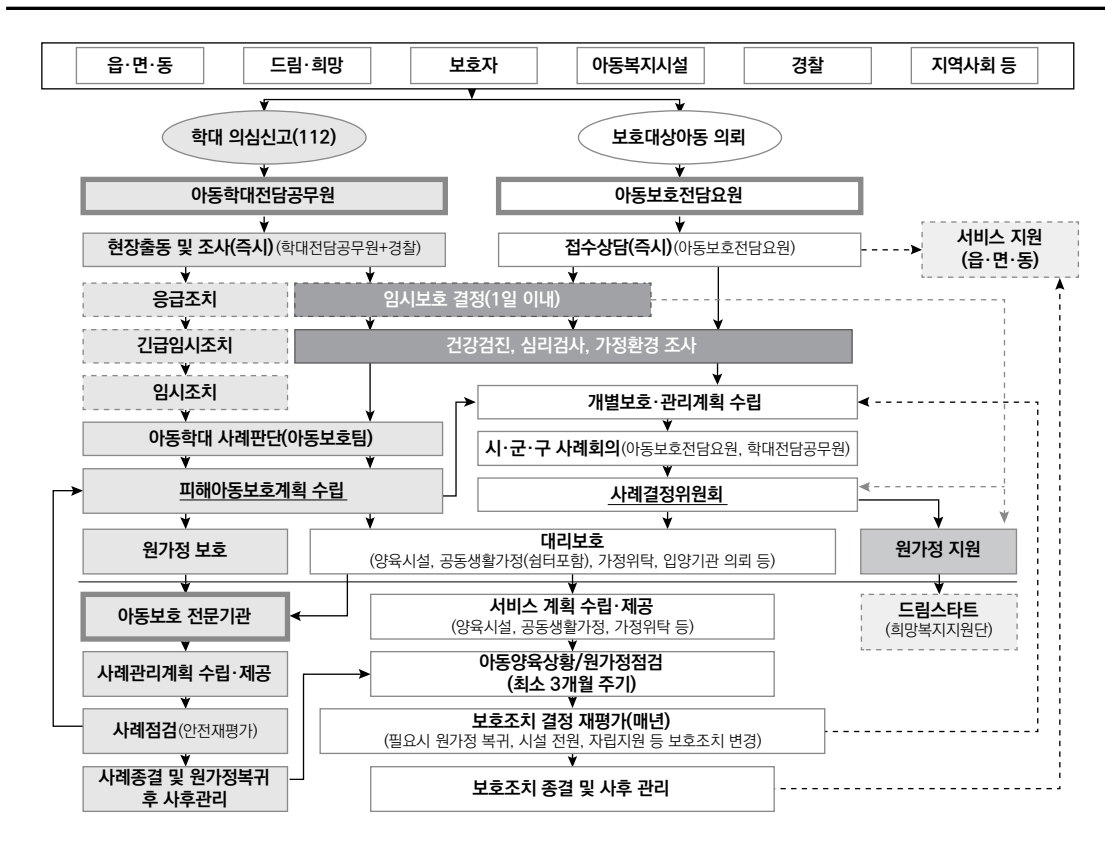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현 정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만 7세 이하 전체 아동에 대상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아동 발달과 교육, 돌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국무조정실, 2021). 그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

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일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공공화되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그림 1).

1) 아동학대 대응 업무 체계의 이원화

아동보호팀이 구축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조사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민간 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 및 인프라의 부족, 특히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권력 부재로 인한 아동학대 예방·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5월 이후 아동보호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

그림 1. 아동보호팀 업무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 18.

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국의 지자체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고,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조사를 공공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남겨져 있어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이원화된 상황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권, 학대 사례 종결에 대한 권한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판단과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아동보호 체계 개편 및 재구조화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 판단과 사례관리의 이원적 분절화로 인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학대피해아동보호의 불연속성 문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아동복지법」상의 법적 근거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 등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류정희 외, 2021).

2)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열악한 업무 환경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기 전까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분리 및 보호 조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아동보호의 전 과정에서 공적 개입은 없었고, 보호대상아동은 발견된 곳에서 가정 보호나 원가정 복귀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배치되었고, 아동의 분리·보호 조치는 물론 사후 관리에 대한 공적 개입이 시작되어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는 보호 서비스 제공,

보호 서비스의 연속적·통합적 제공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의 엄중성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전문성 축적과 연속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업무 요건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334명으로 1개 지자체당 평균 1.5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부분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환경인데다 행정정보 시스템 접근 및 공공 인력으로서의 업무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류정희 외, 2021).

3) 아동·청소년 예방·보호의 사각지대

아동보호팀에서 제공하는 보호 서비스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호대상아동에 국한되어 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타 부처 관할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포괄하지 않고 있다(이상정 외, 2020). 또한 가족 보존·지원 정책의 근간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취약 가구 지원 체계는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 주체별로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보호대상아동 예방과 보호 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류정희 외, 2021). 이로 인해 아동의 연령, 가족 상황, 보호 환경 등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과 보호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나. 정책과제

아동보호팀이 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아동보호 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업무와 사례관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분절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체계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다음으로,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처우와 권한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과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공 사례관리 기능 강화와 인력 확충을 통해 아동보호팀의 통합성을 높여 원팀(one-team)으로 전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 체계와 보호 체계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제공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과 도입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임신·출산 지원, 아동 양육과 돌봄, 교육, 자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부처별로 그리고 아동의 연령과 상황별로 구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입 주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가족)의 욕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 및 장애인·노인·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함으로써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2022년은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해로 사회서비스 정책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이다. 사회서비스의 강화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이 명확하게 수립되고 이를 위한 이행 전략이 내실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핵심 과제는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등록제 개편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장애인 완전 탈시설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에 노출될 수 있는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탈시설화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노인의 기초생활보장과 돌봄, 사회참여,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노인돌봄 정책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분절성을 극복하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2021년 노인돌봄 서비스 정책

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기반의 노인돌봄 강화'와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 정립을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는 만 7세 이하 전체 아동에 대상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아동 발달과 교육, 돌봄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와 성과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화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 팀을 중심으로 지역의 아동보호 컨트롤타워를 강화함으로써 2022년에 더욱 통합적인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국무조정실. (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류정희, 이상정, 이주연, 권지성, 김진석, 이현주. (2021 발간 예정).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

와 원가정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소관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8. 9. 11.).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1. 8. 2.). 탈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OECD Health Statistics.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시도 사회서비스 현황.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pass.or.kr/social-service-center-introduction-state>에서 2021. 12. 5. 인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7호 (2022).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김세진, 황남희, 임정미, 주보혜, 남궁은하,...김경래.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21). 장애인구추계(전국기준).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에서 2021. 12. 31. 인출.

Coote, A., & Percy, A. (2020). The case for Universal Basic Services. Polity: London. John Wiley&Sons.

National Audit Office. (2018). Adult social care at a glance.

OECD. (202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doi: 10.1787/socwel-data-en.

The 2022 Prospects and Issues for Social Service Policy

Ahn, Suran

Oh, Ukchan

Lee, Sang Jung

Lee, YunKy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status and issues for social service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children in 2021.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policy, the 'Basic Social Service Pla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2022 based on the Social Service Agenc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vision, basic goal and direction of social service policy that can continuously drive the rei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policy, and to establish a substantial implementation strategy. In the area of welfare for the disabled, the core policy tasks that have been pursued in the past, such as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hould be continued while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base. In the area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for 2021, while promoting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aging in place' that allows the elderly to continue living in the local area, additional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role of medical care and care system to enhance social efficiency provision. The most notable change in the area of child welfare policy can be found in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for children in need, who suffer abuse/violence, poverty, and family dissolution. In 2022,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continuously promote laws and systems to strengthen the public control tower, a mor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child protection teams in local communities.